

춘천지방법원 2018. 7. 25 선고 2017가단591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

피고A

변론 종결2018. 7. 11.

판결 선고2018. 7. 25.

주 문

1.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B에게 춘천시 C 대 284m²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와 2007. 8. 3. 접수 제355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원고는 피고가 B이 소유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일인 2007. 8. 3.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.

이에 대해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D에게 기한 2008. 12. 31.로 정하여 7억 원을 대여하였고,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툰다.

살피건대,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기한이 도래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.

판사정성균